

세화고 교원인사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세화고등학교 인사 행정의 공정성을 기하여 교원 간의 신뢰를 도모하고자 교원인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칭함)를 설치 운영한다. 본 규정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4(교원인사위원회)와 일주.세화학원 정관 제41조에 따라 세화고등학교에 두는 교원인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원 인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투명하고 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조 직

제2조 (위원회의 조직)

- ① 인사위원회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전체 교직원회의에서 6명을 각 교과별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예체능교양) 1명씩 선출하며, 여기에 학교장이 직접 임명하는 3명의 위원을 더하여 9명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 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10월 1일~ 9월 30일) 이내로 하되, 1년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③ 위원이 징계, 해직 또는 퇴직 시는 자동 해임된다.
- ④ 위원 가운데 결원이 생긴 때에는 15일 이내에 ①에 따라 선출 및 임명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잔여기간이 60일 이내일 경우 위원회 심의로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조 (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

-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장이 임명한다.
-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 ① 인사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단, 간사와 서기는 겸임할 수 있다.
-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 중에서 위원들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 3 장 운 영

제5조 (운영세칙)

일주.세화학원 정관 제41조의 11 인사위원회의 운영세칙에 따라 정관과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① 교원(교장 제외)의 임용(징계 포함) 등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
- ② 신규교원 임용에 따른 공개 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 ③ 기간제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 ④ 교감임용후보자 및 교감자격연수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 ⑤ 교원의 보직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보직교사 임명, 교무분장, 교과 담임과 학급담임 배정에 관한 사항 등)
- ⑥ 교원의 포상 및 연수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 ⑦ 인사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 ⑧ 전체 교원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건의한 사항으로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 ⑨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4 장 회 의

제7조 (회의 소집 및 의결)

-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청할 때, 교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할 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회의록)

-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전자문서로 해당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당해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한다.
- ③ 회의 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다만,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위원회에서 비공개를 결정할 수 있다.

제 5 장 기 능

제9조 (역할)

본 인사위원회에서는 학교장의 자문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제10조 (교원 임용)

- ① (정의)사립학교법 제2조 제4항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하고 “전보”란 교원의 같은 직위 및 자격에서 동일 법인 내의 학교를 달리하여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 ② 학교장 인사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③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제청으로 법인에서 임용한다.

제11조 (신규교사 임용)

- ①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10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가 실시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감에게 그 전형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3을 준용한다.
- ③ 임용권자는 교원을 신규로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마감일 30일 전까지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그 밖의 정보통신 매체를 통하여 채용분야·채용인원 및 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으로 하며, 그 밖에 공개전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정한다.
- ⑤ 전형일정, 제출서류, 시험방법, 시험과목, 전형별 배점 및 가산점 기준, 심사 기준, 합격자 결정 방법 등에 대해서 사전계획을 심의한다.

제12조 (기간제교사 공개채용)

- ① 서울시교육청의 사립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을 따른다.
- ② 1개월 이상 결원 발생 시 채용계획을 수립한다.
(자격요건, 심사위원 구성, 심사일정, 심사방법 등)
- ③ 공개전형 관련 필요사항, 연장계약 적격여부 등을 심의한다.
- ④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학교장(정관에 의거, 이사회로부터 위임)이 확정한다.

제13조 (교감 후보대상자 심의)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추천에 관한 법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교원인사위원회는 교직

경력, 부장 근무경력, 담임 경력, 연수이력 및 연구 실적, 교직원, 결격사유 유무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심의한 후, 복수의 교감 후보자를 추천하여 학교장이 제청하도록 한다.

제14조 (교원의 보직 및 업무분장)

- ① (부장교사의 추천) 본 인사위원회에서는 부장교사의 임용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부장교사를 추천할 때는 담당할 업무의 처리 능력이나 교육 경력을 참작한다. 다만, 교과목의 특성이나 분포비율 및 학교조직을 참작하여 추천하도록 한다.
- ② (교과부장 배정) 본 인사위원회에서는 교과별 교사들의 건의 내용을 참작하여 교과부장을 추천할 수 있다.
- ③ (학급 담임 배정) 본 인사위원회에서는 아래의 배정원칙을 참고하여 담임을 선정 추천한다.
 1. 본인의 희망을 가급적 수렴하되, 행정업무 등을 고려하여 순환 배정의 원칙을 적용하여 적재적소에 배정한다.
 2. 학년별로 교과, 연령, 성별, 교육경력 등을 안배하여 배정한다.
 3. 고령, 출산 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교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에 의한 교사는 예외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
 4. 중도에 학급담임 결원시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학교장이 배정한다.
 5. 학교 명예 실추 및 담임교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자는 담임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④ (교무분장 조직) 본 인사위원회에서는 부서별로 교무분장을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의 희망과 해당 부장의 의견을 참작하되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추천한다.
 1. 학급담임 배정여부, 본인의 수업시수, 담장자의 경력, 부서별 인원구성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다.
 2. 학교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는 배정하고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 (교원의 연수대상자 추천)

본 인사위원회에서는 아래의 원칙으로 각종 연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 ① 자격연수는 해당 교사 모두 추천한다.
- ② 직무연수 및 기타연수는 희망자를 우선적으로 추천하되, 희망자가 정원과 다를 경우에는 부장교사, 해당 연수의 교과 전문 교사, 연수를 받은 적이 없는 교사, 연수 이수 경험이 오래된 교사, 교육경력이 긴 교사 순서로 추천한다.

제16조 (포상 및 표창 대상자 추천)

본 인사위원회에서는 각종 포상 및 표창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추천시에는 사무와 관련한 공헌도, 교직 경력 등을 고려한다.

제17조 (규정개정)

본 규정은 일주.세화학원 정관의 개정이 있거나 학교장의 개정발의, 인사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개정발의가 있을 때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18조 (기타 사항)

1. 교원의 행정처분 등은 별도의 계획에 따른다.
2. 본 규정에 제시되지 않은 인사관련 사항이나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도 자문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19년 4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21년 4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8. 본 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